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단886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7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49㎡를 인도하고,
나. 18,530,000원을 지급하고,
다. 2024. 7. 8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,9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임경옥

별지